“일본 과로사방지법, 지난 10년을 돌아보다” 1)

- 제11회 일본 과로사방지학회 참가기

한노보연 과로사 감시팀

지난 9월 6일과 7일, 일본 교토 류코쿠 대학에서 ‘제11회 과로사방지학회’가 열렸다. 일본에서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이하 ‘과로사방지법’)이 제정·시행되기 시작한 2014년으로부터 1년 후인 2015년,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실제 제정까지 이어지게 한 연구자, 변호사,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 일본의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해 발표하는 첫 학회를 열었고,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11회 학회에서는 과로사를 주제로 국제연대 활동(‘아시아 과로사 감시’)을 하는 한노보연, 일본의 ‘POSSE’, 대만의 ‘OSH Link’, 인도네시아 ‘LIPS’가 함께 국제 세션을 열어 각국의 과로사, 과로자살 실태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시행 10년

이번 학회의 핵심은 과로사방지법 시행 10년을 되돌아보며 법 제정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를 돌아본 ‘특별기획 세션’이라 할 수 있겠다. 몹시 궁금했다.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말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감소했을까?’ 이 세션의 좌장인 구로다 겐이치는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과로사, 과로자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 그런 변화는 생기지 않고 오히려 과로사가 증가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짚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와 일본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법 자체에 한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 모임’의 데라니시 아이코 대표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

1) 법 제정이 된 것은 2014년이지만, 이번 학회에서는 지난 10년을 돌아본다는 의미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10년이라고 하였다.

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닥치는 현실에 대해 짚었다. 이들은 일을 시킨 회사가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 가족에게 산업재해, 그리고 사측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또한 노동시간이나 직장에서 발생한 일 등의 증거 수집에도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유족 대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과로사 및 과로병 예방 대책 추진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조사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대책에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데라니시 아이코 대표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 11시간 이상 의무화, 과로사 등 실태파악을 통한 조사 분석을 행할 때 휴직자와 중도퇴직자, 재직사망자에 대해서도 포괄적 분석을 실시하여 방지 대책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의 의무 법령 위반은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일하다 과로사, 과로자살하는 노동자들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갑작스런 업무 변경과 높은 업무 강도를 겪다가 사망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서의 과중한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은 일본 사회 안에서의 그것만큼이나 심각하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할 사람이나 네트워크 등의 자원이 본국에서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단체가 있다. 해외에서 과로사한 노동자 유가족들의 움직임으로 발족한 '해외노동연락회'(Labor Issues Networking for Japanese Overseas Workers)'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학회에서 해외노동연락회가 하나의 세션을 맡아 발표했다. 세션에는 과로사, 과로자살로 생을 마감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유가족들도 발표로 참여했다.

'특집3'에서 인터뷰로 참여한 한 유가족의 남편 사례에 이어 또 다른 유가족 사례도 들어볼 수 있었다. 우에다 나오미 씨의 아들 유키씨(당시 27세)는 2022년 태국으로 파견되어 일을 하다 파견 3개월 만에 과로자살했다. 유키씨는 완벽하지 않은 영어로 현지에서 소통하며 자신의 영역인 전기와 다른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돌발적인 사고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고, 제대로 해내지 못하자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해외 과로사 사건은 노동시간을 파악하는 것부터, 무엇이 노동자 본인을 몰아붙였는지 파악하기가 일본 국내보다 더 어렵다는 점이 큰 장벽이다. 우에다 나오미씨는 아들이 일하던 회사와 협의해 작성하고 있는 '해외파견 매뉴얼'이 제정 및 실행됨으로써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누구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2025.09.06. '교원의 일하는 방법 개혁의 현상과 과제 -과로사 등 방지의 관점에서' 세션 진행 모습. 사진 : 유청희

교사들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

일본 교사들은 초과노동 시간이 매우 길지만, 초과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사의 헌신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하다.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교사들의 업무는 끝나지 않고 상당 시간 이어진다. 그러나 교사들의 시간 외 노동은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 외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을 하는데도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교사 인력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는 교사의 초과 노동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실정이라며 한탄했다.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안전보호법이 있지만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 교사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 건강을 보호받기가 너무나 어렵다. 여기서 심각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교사 결원 실태다.

발표자는 교사들이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한 달 초과노동 시간이 80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루 기준 45분 휴식 시간이 지켜지기는 어렵고 실제로 거의 쉴 수 없다고 했다. 업무를 집에서까지 하지만 이런 노동시간은 파악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과로 심각성을 해결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들은 '신앙인 의식'을 강요받는 교원의 노동을 호소했다. 자신들의 업무가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교사들 스스로도 강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사들은 과로사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조차 어렵다. 학생들이 가해자로 비칠까 봐 문제 제기조차 꺼린다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교원의 과로와 업무 부담에 대해, 학생에게 무엇이든 해 줘야 한다는 부담, 신자유주의적 정책, 교육 예산 규모, 업무 증가, 경쟁 도입 등의 정책이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교사뿐 아니라 노동의 민주화가 일본에서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04년 이후 자기책임 논리가 강화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초과 노동을 노동으로 인

정하는 것, 업무일 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과로사, 과로자살, 해외연대 투쟁

과로사, 과로자살은 실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특히 일본에서 가장 심각했고, 여전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해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역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POSSE의 곤노 하루키는 일본의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인식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에서 과로사는 사회적으로 대부분 유가족 소송에 의존해 처리되고 있다.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로사'로 아예 처리되지 않고, 산재 신청을 했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면 '과로사'로 법적 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 곧바로 기업 책임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기업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때 비로소 그렇게 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차이는 유가족의 법률 행위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데, 이는 과로사방지법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한국과 대만은 공통점이 많다. 일본은 법제화를 하면서 과로사를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대만과 한국에는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양국 모두 과로사, 과로자살이 심각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장향미의 발표에서는 한국의 과로 주요 원인으로 포괄임금과 야간노동이 지적되었다. 한국에서 전체 산업재해, 사고, 질병과 비교해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승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과로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2018년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추 링의 발표에서 대만 과로자살에 관해 지적된 주요한 우려점은 과로자살 문제의 초점이 사후적 괴롭힘 처벌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치중하는 이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건강하고 지원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 대만 역시 과로사, 과로자살 산재 보상 신청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길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블랙 기업, 관리 감독에 소극적인 행정기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기관, 이 세 요소가 과로사, 과로자살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번 학회의 대부분의 발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예방이 가능하려면

한국에는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명시하는 법이 아니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질문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서 적정한 시간 동안 노동해야 한다는, 그리고 과로를 포함해 노동자에 대한 각종 압박과 괴롭힘 및 스트레스로 노동자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 또한 법규를 위반한 기업을 제대로 처벌할 때, 과로사와 과로자살 예방도 마침내 가능할 것이다.